

< 정 오 표 (1) >

1. 정정대상 투자신탁

- 유리글로벌거래소증권투자신탁1호[주식]

2. 효력발생예정일(변경시행일) : 2016.02.24

3. 주요 정정사항 :

- 자투자신탁으로 변경
-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특례사항 반영
- C-W클래스 가입자격 추가
- C-P1클래스 추가
- 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
- 모투자신탁 투자대상자산 신용평가등급 관련 내용 보완

[규 약]

| 항 목 | 정 정 전 | 정 정 후 |
|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제2조(용어의 정의) | 1~9. (생략) <신설> | 1~9. (현행과 같음) 10. "모자형"이라 함은 법 제233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집합투자기구(모집합투자기구)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자집합투자기구가 취득하는 구조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. |
| 제3조(투자신탁의 명칭 및 종류) |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, 투자신탁의 명칭은 "유리글로벌거래소증권투자신탁 제1호[주식]"이라 한다. (이하 생략)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. 1~5. (생략) <신설>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~4. (생략) 5. Class W 수익증권 :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 전용 수익증권 6~8. (생략) <신설> <신설> | ① 이 투자신탁은 증권투자신탁으로서, 투자신탁의 명칭은 "유리글로벌거래소증권투자신탁 제1호[주식]"이라 한다. (이하 생략) ② 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. 1~5. (현행과 같음) 6. 모자형 ③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~4. (현행과 같음) 5. Class W 수익증권 : 판매회사의 일임형 Wrap 계좌 및 특정금전신탁 전용 수익증권 6~8. (현행과 같음) 9. Class C-P1 수익증권 :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 및 퇴직연금사업자 전용 수익증권 ④ 이 투자신탁은 모자형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유리글로벌거래소증권모투자신탁[주식] |
| 제16조(투자목적) | 이 투자신탁은 본 신탁계약 제17조에서 정의된 <u>해외주식</u> 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 | 이 투자신탁은 본 신탁계약 제17조에서 정의된 <u>해외주식</u> 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 |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| 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| 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|
| 제17조(투자대상 자산 등) | <p>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1. <u>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주권,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,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(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 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법 제8조의2제4항의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에 한한다) 및 지분증권을 기초로 하여 예탁결제원이 발행한 증권예탁증권. 단, 법 제196조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제외한다.(이하 "주식"이라 한다)</u> <u>2~18. (이하 생략)</u> <u>19. (생략)</u></p> | <p>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 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.</p> <p>1. <u>제3조제4항제1호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(이하 "모수익증권"이라고 한다)</u> 2. <u>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 및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(다만, 위험회피 목적을 위한 거래에 한한다) (이하 "파생상품"이라 한다)</u> 3. <u>헤지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파생상품 거래에 증거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채권</u> <u>2~18. (삭제)</u> <u>4. (현행과 동일)</u></p> |
| 제18조(투자대상 자산 취득한도) | <p>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</p> <p>1~10. (이하 생략)</p> <p><신설></p> | <p>집합투자업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신탁재산을 운용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.</p> <p>1. ~ 10. (삭제)</p> <p>1. <u>제3조제4항제1호의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% 이하로 한다.</u> 2. <u>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 이하가 되도록 한다.</u> 3. <u>헤지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파생상품거래의 증거금 납입을 위한 채권은 투자신탁재산의 5% 이하로 한다.</u> 2. <u>제17조제2항 각 호 방법에서의 운용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% 이하로 한다. 다만,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 이하의 범위 내에서 10%를 초과할 수 있다.</u></p> |
| 제19조(운용 및 투자 제한) | <p>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(생략) 2~9. (생략)</p> | <p>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. 다만,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. (현행과 동일) 2~9. (이하 생략)</p> |
| 제20조(한도 및 제한의 예외) | <p>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</p> | <p>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호,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다만,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</p> |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| <p>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2. (생략)</p> <p>5. 투자신탁재산인 <u>증권</u>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 <u>내지 제4호</u>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</p> <p>②~③ (생략)</p> | <p>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2. (현행과 동일)</p> <p>5. 투자신탁재산인 <u>모투자신탁 수익증권</u>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제1호,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</p> <p>② ~ ③ (이하 생략)</p> |
| 제25조의2(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) | <신설> |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한다. |
| 제26조의2(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청구) | <신설> |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한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금전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 |
| 제27조(환매가격 및 환매방법) | ④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. <u>다만,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.</u> | ④ 환매대금은 투자신탁재산으로 보유중인 금전 또는 투자신탁재산을 매각하여 조성한 금전으로 지급한다. 다만, <u>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.</u> |
| 제28조(환매연기) |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(신탁업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. <신설> | ①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증권의 환매에 응하여야 하는 집합투자업자(신탁업자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는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의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등 법 시행령 제256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. <u>또한,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에도 환매를 연기할 수 있다.</u> |
| 제30조(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) |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·게시하되,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(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)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,000원으로 공고한다. 다만,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·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. |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(<u>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</u>)을 매일 공고·게시하되,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(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)의 기준가격은 1좌를 1원으로 하여 1,000원으로 공고한다. 다만, 수익자가 없는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·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. |
| 제35조(상환금등) | ② 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| ② 집합투자업자가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|

| | | |
|------------------|--|---|
| 의 지급) |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. |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<u>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</u>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<u>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</u>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. |
| 제37조(수익자총회) | <p>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,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.</p> <p>②~⑩ (생략) <신설></p> | <p>①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두며,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 및 <u>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</u>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.</p> <p>②~⑩ (현행과 동일)</p> <p>⑪ <u>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그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</u> 집합투자업자는 <u>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</u></p> |
| 제39조(투자신탁 보수) | ③ (생략) <신설> | ③ (현행과 동일) ClassC-P1 수익증권 보수 신설 |
| 제43조(신탁계약의 변경) | ④ 수익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,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 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 다만,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| ④ 수익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일(<u>모투자신탁의 신탁계약 변경의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 또는 통지된 날을 말한다</u>)부터 1월 이내 판매회사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고, 이 경우 판매회사는 제4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매수수료를 받지 아니한다. 다만, 제3항 및 신탁계약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법령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|
| 제50조(공시 및 보고서 등) | <p>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 (중략)</p> <p>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⑥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</p> | <p>②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(<u>모투자신탁의 경우를 포함한다</u>) 이 발생한 경우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. (중략)</p> <p>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(<u>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</u>)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⑥ 신탁업자는 투자신탁의 회계기간 종료 등</p> |

| | |
|--|---|
| <p>법 제9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(이하 생략)</p> | <p>법 제90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 제248조에서 규정한 자산보관·관리보고서(모투자신탁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)를 작성하여 수익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 다만, 수익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법 시행령 제27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(이하 생략)</p> |
|--|---|

[일괄신고서/투자설명서]

| 항 목 | 정 정 전 | 정 정 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펀드명 | 유리글로벌거래소증권투자신탁제1호[주식] | 유리글로벌거래소증권투자신탁제1호[주식] |
|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| <신설> | 14. 이 투자신탁은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상장주식의 매매·평가 손익(환율변동에 의한 손익을 포함)은 투자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됩니다. |
| 요약정보 | <신설> | 간이투자설명서 내용 추가 |
| 제1부. 2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| 마. 특수형태 표시 - <신설> | 마. 특수형태 표시 - 모자형 (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을 자투자신탁이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) |
| 제2부. 5. 운용전문인력 | | 운용현황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|
| 제2부.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| 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- <신설> 나. 종류형 구조 <신설> 다. 모자형 구조 <신설> | 가.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- 모자형 <별첨1> 그림 참고 나. 종류형 구조 Class C-P1 수익증권 추가 다. 모자형 구조 <추가> <별첨2> 그림 참고 |
| 제2부.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| 가. 투자대상 <신설> 나. 투자제한 <신설> | 가. 투자대상 [모투자신탁의 투자대상] <추가> (이하 생략) 나. 투자제한 [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] <추가> (이하 생략) |
| 제2부. 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| 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[투자전략] - 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주로 전 세계 주식시장에 상장된 증권, 선물, 상품 등 각 | 가.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[투자전략] - 이 투자신탁은 전 세계 주식시장에 상장된 증권, 선물, 상품 등 각종 거래소와 거래 |

| | | |
|--|---|---|
| | <p>종 거래소와 거래소 유관기관이 발행한 외국주식에 투자하여 장기적인 자본이득 등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</p> <p>(이하 생략)</p> | <p>소 유관기관이 발행한 해외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법시행령 제94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</p> <p>(이하 생략)</p> |
| <p>제2부.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</p> | <p><신설></p> | <p>- 이 투자신탁은 자산의 대부분을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므로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위험으로 이전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. 다음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.</p> |
| <p>제2부. 11. 매입, 환매,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</p> | <p>가. 매입 (1) 매입방법 (생략) <신설></p> <p>나. 환매 (1) 수익증권의 환매 (생략) <신설></p> <p>(6)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(생략) <신설></p> | <p>가. 매입 (1) 매입방법 (현행과 동일)</p> <p>- <u>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여야 합니다.</u></p> <p>나. 환매 (1) 수익증권의 환매 (현행과 동일)</p> <p>- <u>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. 다만, 이 투자신탁이 보유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<p>(6)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(현행과 동일)</p> <p><u>또한,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환매가 연기된 경우에도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|
| <p>제2부.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/p> | <p>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<신설></p> | <p>가.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Class C-P1 수익증권 추가</p> |
| <p>제2부.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</p> | <p>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</p> | <p>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계약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</p> |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| <p>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.</p> | <p><u>는 이 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 및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다른 자투자신탁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.</u></p> |
| <p>제2부.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</p> | <p>(1) (생략) (2) 수익자에 대한 과세 (생략) '※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한 가입자에 대한 특례' 추가 (3) (생략) <신설> <신설></p> | <p>나. 과세 (1) (현행과 동일) (2) 수익자에 대한 과세 (현행과 동일) '※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을 통한 가입자에 대한 특례' 추가 (3) (현행과 동일) (4) <u>'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' 추가</u> (5) <u>'퇴직연금제도의 세제(Class C-P1 가입자에 한함)' 추가</u></p> |
| <p>제4부.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</p> | <p>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규모</p> | <p>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<u>최근 사업연도 기준으로 업데이트</u> 라. 운용자산규모 <u>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</u></p> |
| <p>제5부. 1.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</p> | <p>가. 수익자총회 등 (1) 수익자총회의 구성 ① (생략) ② 수익자총회는 법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. (2)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(생략) <신설> (3)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(생략)</p> | <p>가. 수익자총회 등 (1) 수익자총회의 구성 ① (현행과 동일) ② <u>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 및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사유 중 이 투자신탁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</u> ③ <u>종류형 집합투자신탁인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해서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당해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.</u> (2)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(현행과 동일) - <u>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,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의 목적이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와 동일한 시간 및 장소에서 이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.</u> (3)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(현행과 동일)</p> |

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| <신설> | - 모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개최사유 중 이 투자신탁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|
| 제5부. 3.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| (3)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-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. - (생략) | (3)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-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법 제9조 제15항 제3호 가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 제87조 제7항에 따른 의결권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(법 제9조 제15항 제3호 나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)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. - (현행과 동일) |

[간이설명서]

| 항 목 | 정 정 전 | 정 정 후 |
|------------|---|---|
| 간이투자설명서 전체 | <신설> | 간이투자설명서 서식 개정 |
| 표지 | 1. 집합투자기구 명칭 유리글로벌거래소증권투자신탁제1호[주식] 2. 집합투자기구 분류 (생략), <신설> | 1. 집합투자기구 명칭 유리글로벌거래소증권투자신탁제1호[주식] 2. 집합투자기구 분류 (현행과 동일), <u>모자형</u> |
| Ⅲ. [1] 과세 | <신설> | '※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과세' 추가 '※퇴직연금제도의 세제(Class C-P1 가입자에 한함)' 추가 |

<별첨1>



<별첨2>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모투자신탁 | 유리글로벌거래소증권모투자신탁[주식] |
| 자투자신탁 | 유리글로벌거래소증권자투자신탁제1호[주식] |
| 유리글로벌거래소증권자투자신탁제1호[주식] |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% 이하 |